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0.

발 의 자 : 이성윤 · 조계원 · 모경중
박균택 · 민형배 · 조정식
문정복 · 윤준병 · 서삼석
김기표 · 고민정 · 소병훈
최기상 · 최혁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.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,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허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·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

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

것임(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).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“출국대기소”란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는 자, 노약자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인도적 처우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 밖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.

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“출국대기실의”를 “출국대기실 및 출국대기소의”로, “안전대책, 출국대기실”을 “안전대책,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“출국대기실””을 ““출국대기실” 또는 “출국대기소””로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(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)의 신청에 따라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는 자, 노약자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.

③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대기실·출국대기소(이하 “송환대기장소”이라 한다)에서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6조의3제1항 중 “제7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”를 “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항의”로 한다.

제76조의4제2항 후단 중 ““출국대기실””을 ““출국대기실” 또는 “출국대기소”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7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7. (현행과 같음) 18. “출국대기소”란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는 자, 노약자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인도적 처우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 밖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.
제76조의2(송환대기장소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6조의2(송환대기장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(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)의 신청에 따라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장기간 대기

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6조의4(강제력의 행사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피보호자”는 “송환대상외국인”으로, “보호시설”은 “<u>출국대기실</u>”로 본다.	제76조의4(강제력의 행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“<u>출국대기실</u>” 또는 “<u>출국대기소</u>”-----.